

교원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정의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 구분과 직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보장임용 대상 여부에 따라 정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계약제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계약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정년제 전임교원은 일반교수, 교육집중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로 구분한다.

④ 강사는 담당교과목에 관한 교육·지도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제2조제2항이 정하는 계약제 교원의 경우에는 제23조의2, 제23조의8, 제26조,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12, 제27조, 제29조, 제52조,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교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계약제 전임교원에게는 특정한 임무를 전담케 하며, 부여한 임무와 역할 등에 따라 당해 교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임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전담교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전담교수 : 담당 강의를 중심으로 학생교육의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교과강의, 교과 및 교재개발, 교육 관련 학생상담 및 지도 등

2. 연구전담교수 :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연구의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연구활동 및 교내외 연구사업 참여, 교과강의 등

3.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형) : 산학협력활동, 학생취업 및 창업지도 등의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산학협력 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 취·창업 활동지원, 교과강의 등

③ 교원의 임무 중 특정 임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교원을 신규로 임용하거나 기존의 교원 중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관계법령,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정관」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이 조에서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준용) 교원 인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임 용

제 1 절 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임용절차 등

제7조 (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은 매 학년도 3월 1일 및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일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용기간) ① 신규임용되는 정년제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직위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단, 교수 직위로 최초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에 의하여 임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정년제 교원의 신규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처음으로 재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위에 따라 다음의 임용기간을 부여한다.

1. 삭제
2. 조교수 : 7년
3. 부교수 : 8년
4.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정년제 교원이 제22조의 승진소요연수 경과 후 승진하지 못한 채 제2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임용기간을 부여한다.

1. 조교수 : 2년
2. 부교수 : 3년

④ 계약제 교원은 임용되는 직위에 따라 다음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계약제 교원 중 연구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며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인 외국인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조교수 : 2년
2. 부교수 : 3년

⑤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일로부터 승진 직위에 대한 임용기간을 다시 부여한다.

⑥ 임용기간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임용의 발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단, 임용이 사무상의 오류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교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망한 경우
2.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징계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1조 (임용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교원은 「정관」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되는 정년제 교원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 임용절차 및 임용조건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제20조 내지 제21조의2에 따라 재임용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임용절차) <삭제>

제11조의3(계열구분) ①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을 위한 평가기준 적용(연구실적, 정량평가)을 위한 학과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인문계열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2. 사회과학계열 :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행정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체육학과, 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 특수치료전문대학원
 3. 자연A계열 : 화학·생명환경과학부(화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원예생명조경학과, 식품응용시스템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4. 자연B계열 : 수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5. 미술계열 : 현대미술전공, 공예전공,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6. 교양대학 : 학문분야에 따라 유관계열기준 적용
-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항목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 2 절 신규임용

제12조 (자격) ① 본교에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이하 ‘신임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단, 예·체능계열, 외국인, 기타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삭제>

4. 「정관」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② 초빙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실적, 실무경력 등의 특정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분야별 특정조건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 (신임교원의 임용) ① 신임교원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신임교원은 임용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신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6조의2를 따른다.

제14조 (신임교원 임용자격의 기준) ① 신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조교수 : 4년
2. 부교수 : 7년
3. 교수 : 10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 및 교육경력연수를 환산하는 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임용직위) ① 신임교원의 임용직위는 조교수(1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정규 4년제 대학의 정년제 교원으로서의 다음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1. 조교수(3년차) : 직전대학의 조교수 교육경력 3년 이상 또는 부교수 교육경력 2년 미만인 자
2. 부교수 : 직전대학의 부교수 교육경력 2년 이상 또는 직전대학 교수 경력자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제 신임교원의 임용직위는 조교수(1년차)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의 업적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게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의2 (초임호봉) ① 정년제 신임교원의 초임호봉은 연구 및 교육경력을 고려하여 확정하며 초임호봉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제14조 제2항과 달리 정년제 신임교원 초임호봉확정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경력연수는 [별표 1]의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제 신임교원의 초임호봉은 제3조 2항에 따라 당해 교원이 전담하게 되는 임무의 특성 및 기타 책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며, 초임호봉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7조 (임용계약) ① 신임교원은 「정관」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며, 서면으로 작성하되 임용기간, 소속 및 직위, 보수, 의무, 업적평가,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기타 임용조건 등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의무) ① 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신임교원은 신앙인으로서 교회 신앙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지) ① 신임교원은 사전승인 없이 계약기간 중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타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신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수업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단, 학술연구, 공무수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신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본교의 모든 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④ 신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교원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 ⑥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정관」 제44조의 제5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사유로 휴직할 수 없다.

제 3 절 재임용

제20조 (재임용 절차) ① 재임용 평가시기는 매학기, 연 2회로 한정하며, 재임용 기준일 직전의 임용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이 상기기간 내에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다. 심의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본교의 교육이념 및 학교 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 (재임용 구분) ① 재임용이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년제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재임용 : 신규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재임용
 2. 승진탈락재임용 : 승진소요연수가 경과되었으나 승진이나 정년보장 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루어지는 첫번째 재임용
 3. 후속재임용 : 제2호의 재임용 후에 이루어지는 재임용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라 각 시기별로 행해지는 정년제 교원의 재임용은 [별표 7]과 같다.
-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직위별 임용기간에 따라 재임용한다.

제21조 (재임용 조건) ①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당해 교원이 평가대상기간 중에 수행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영역 등의 제반업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되,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발표(게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각 영역별

업적 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정년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각 영역별 연간소요점수가 재임용 평가대상기간 만큼 합산한 점수 이상 충족(단, 교육영역은 평가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소요 점수를 합산)

2. [별표 3의 2]의 재임용 최소연구실적 충족

3.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1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3.9 이상

4.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평가대상기간 중 교수구분(일반교수, 교육집중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을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 전·후로 각 교수구분별 소요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소요점수가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제 신입교원의 최초재임용은 임용직위와 관계없이 임용기간 중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요구하는 신입교원의 영역별 소요점수 및 [별표2]의 신입교원 재임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평가를 통과한 자로 한다. 단, 봉사영역의 소요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재임용 평가 대상자는 위 실적 이외에 법인 이사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제 교원의 재임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하며, 강의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11]을 적용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은 당연퇴직한다.

제21조의2 (세부사항) 교원 재임용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승진임용

제22조 (승진소요연수) ① 정년제 교원의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6년 (단, 조교수(3년차)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4년)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5년

② <삭제>

③ <삭제>

④ 계약제 교원의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계약제 교원 중 석사학위 이하의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을 하지 않는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6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승진소요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제24조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3조 (승진임용 절차 및 조건) ① 승진임용 평가시기는 매학기, 연 2회로 한정하며, 신규임용 또는 현직위 승진학기로부터 승진기준일 직전학기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단, 조교수(1년차)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정년제 교원이 승진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직위에 따른 제반 승진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계약제 교원은 계약시 별도로 정한 승진 조건을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사를 통과하면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강의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11]을 적용한다.

⑤ 승진 평가 대상자는 위 실적 이외에 법인 이사회 또는 승진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승진을 위한 평가 및 심사과정에서 승진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기일에 승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체평가서 내용을 중심으로 승진심사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⑦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보고된 승진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⑧ 부교수 및 교수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가 겸한다.

제23조의2 (교수 승진임용심사) ① 정년보장임용을 받은 교원은 정년보장임용과 동시에 교수로 승진임용된다.

②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여 정년보장임용이 되는 교원은 교수 승진임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이 때 별도의 승진임용심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③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 12를 따른다.

제23조의3 (부교수 승진임용심사 : 신청조건) 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하는 정년제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각 영역별 연간소요점수가 평가기간만큼 합산한 점수 이상 충족(단, 교육영역은 평가대상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소요점수를 합산)

2. [별표 3]의 부교수 승진임용 최소연구실적 충족

3.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1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3.9 이상

4.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승진심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업적은 승진심사 신청 학기 종료 4개월 이전에 발표(게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③ 부교수 승진심사를 신청하는 교원은 평가기간 동안 수행한 본인의 제반업적에 대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6을 준용한다.

제23조의4 (부교수 승진임용심사 : 평가기준)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 교원이 평가기간 동안 수행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의 교수업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승진심사를 시행한다.

② 교원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요소 외에 자체평가서 평가 및 소속교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및 연구 능력은 물론 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사회성, 학교 및 학과 발전에의 기여도, 제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부교수 승진심사의 평가방법은 제26조의8의 정년보장심사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승진심사결과 평가총점 75점 이상을 취득하면 부교수 승진심사를 통과한다.

④ 부교수 승진심사 시행에 관한 자세한 평가기준은 [별표 5]의 기준을 따른다.

제23조의5 (부교수 승진임용심사 : 이의신청) ①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교원

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재심결과(평가총점 80점 이상 취득시 통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원심사결과와 재심결과를 토대로 승진임용여부를 재심의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라 행해진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의6 <삭제>

제23조의7 (조교수 재임용 기간 중의 승진심사) ① 부교수 승진소요연수가 경과되었으나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시까지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1조의2를 따른다.

② 조교수 재임용 기간 중 제23조의3의 부교수 승진심사 신청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교원은 부교수 승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승진심사 신청에 필요한 기존의 최소 연구실적에 재임용 기간에 비례하는 조건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23조의8 (승진의 유보 및 탈락) ① 승진임용 심사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잔여 임용기간 내에서 승진 조건을 완료한 때에 다시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승진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승진임용 심사를 유보하는 교원에게는 기존의 최소연구실적에 유보기간에 비례하는 조건을 가산하여 부과되, 이 때의 연구실적은 유보하는 학기에 대한 교수구분(일반교수, 교육집중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한다.

③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잔여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승진심사의 재신청 및 연구실적조건 가산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에 승진이 유보된다.

제24조 (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직위별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소요연수에 달하였을지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 출강한 자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교원의 승진 제한에 대한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제25조 (승급 및 승급의 제한) ① 승진소요연수가 경과되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호봉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승급 및 승급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제26조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교원이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1. 연구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③ 교원의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2 (세부사항) 교원의 승진임용 시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의 2 정년보장임용

제26조의3 (정년보장임용) ① 교원이 정년보장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정년보장심사를 시행하며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정년보장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④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우리 대학이 교수 직위로 임용하는 때에는 별도의 정년보장심사 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제26조의4 (정년보장심사의 신청자격) 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하는 정년제 부교수가 정년보장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각 영역별 연간소요점수가 평가기간만큼 합산한 점수 이상 충족(단, 교육영역은 평가대상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소요점수를 합산)

2. [별표 3]의 교수 승진임용 최소연구실적 충족

3.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2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0 이상

4.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정년보장심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연구 및 산학협력 업적은 승진심사 신청 학기 종료 4개월 이전에 발표(게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의5 <삭제>

제26조의6 (자체평가서) ① 정년보장심사를 신청하는 교원은 평가기간 동안 수행한 본인의 제반 업적에 대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서에는 교육, 연구, 봉사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실적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각 영역별 평가 가중치를 평가받는 교원이 스스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업적평가가 완료된 업적 중에서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적을 강조할 수 있다.

③ 정량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업적이나 기타 기여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본교 중장기발전계획과 학과 발전계획을 참조하여 교육, 연구, 봉사 전 영역(산학협력 포함)에 걸쳐 본인을 스스로 평가하되, 정년보장교수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과 우수업적, 본교·학과 발전에의 기여도, 정년보장 이후의 발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서를 작성한다.

제26조의7 (정년보장심사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①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 교원이 평가기간 동안 수행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의 교수업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년보장심사를 시행한다.

② 교원의 정년보장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요소 외에 자체평가서 평가 및 소속교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및 연구 능력은 물론 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사회성, 학교 및 학과 발전에의 기여도, 제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정년보장임용 평가시기는 매학기, 연 2회로 한정하며, 부교수 직위 승진학기로부터 정년보장임용 기준일 직전학기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④ 정년보장심사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기일에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체평가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보장심사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제26조의8 (정년보장심사 : 정량평가 및 역량평가의 시행) ① 정년보장심사는 정량평가(70점)와 역량평가(30점)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량평가와 역량평가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다.

② 정량평가는 교육영역(30점), 연구영역(30점), 봉사영역(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

③ 역량평가는 자체평가서 평가(20점)와 소속교수 평가(10점)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자체평가서 평가 :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별표 8]의 심사평정표를 사용하여 평가대상 교원이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소속교수 평가 :

가. 평가대상 교원의 소속학과 전체 정년제 교원(연구년 교원 중 희망자 포함, 휴직·신임교원 등은 제외)은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0]의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별표 9]의 심사평정표를 통해 학과 교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속교수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한다.

다. 평가하는 학과 교수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 연구년 교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그 후에도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유사분야 학과의 교수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정년보장심사 시행에 관한 자세한 평가기준은 [별표 5]의 기준을 따른다.

제26조의9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교원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재심결과(평가총점 85점 이상 취득시 통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원심사결과와 재심결과를 토대로 정년보장임용여부를 재심의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라 행해진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삭제>

제26조의10 (부교수 재임용 기간 중의 정년보장심사) ① 교수 승진소요연수가 경과되었으나 부교수 임용기간 만료시까지 정년보장임용이 되지 못한 교원은 부교수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한 부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1조의2를 따른다.

③ 부교수 재임용 기간 중에 제26조의4 정년보장심사 신청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교원은 정년보장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년보장심사 신청에 필요한기존의 최소 연구실적에 재임용된 기간에 비례하는 조건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26조의11 (정년보장심사의 유보 및 탈락) ① 정년보장심사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잔여 임용기간 내에서 정년보장심사 신청조건을 완료한 때에 다시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년보장심사를 유보하는 교원에게는 기존의 최소연구실적에 유보기간에 비례하는 조건을 가산하여 부과하되, 이 때의 연구실적은 유보하는 학기에 대한 교수구분(일반교수, 교육집중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한다.

③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잔여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정년보장심사의 재신청 및 연구실적조건의 가산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에는 정년보장임용이 유보된다.

제26조의12 (세부사항) 교원의 정년보장임용 시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보직임용

제27조 (정의) 보직임용이라 함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행정부서의 장 및 대학의 학과(부)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 기관의 장, 교목실장, 도서관장 등을 포함한 기타 보직은 총장이 임용한다.

③ 보직의 신설과 폐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8조 (자격과 임기) ① 제27조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보직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원의 보직은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임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사임시점부터 2년 발령하거나 총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아동연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임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직교원 최소연구실적 감면) ① 보직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진임용을 위한 최소연구실적을 감면한다.

1. 처장: 부교수로서 보직재임한 기간을 감면기간으로 한다.

2. 산학협력단장, 국제교류단장, 교육혁신단장 : 보직재임기간의 1/2을 감면기간으로 한다.

② 보직재임기간의 계산은 6개월(1학기) 단위로 하며, 학기단위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잔여기간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1학기로 인정한다.(5개월 미만은 절사함)

제 3 장 신분보장

제 1 절 정년 및 퇴직, 면직, 직위해제

제29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제3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 퇴직된다.

② 교원이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 (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단, 당해 교원이 제20조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34조 (명예퇴직) 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원수급계획 및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신청절차, 심사 및 결정,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예퇴직규정」을 따른다.

제35조 (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파견

제36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정관」 제44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7조 (근속 통산기간) ① 휴직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제2호, 제4호의 휴직기간과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③ 「정관」 제44조제7호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38조 (휴직교원 신분) 휴직교원의 신분은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휴직 중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휴직교원 처우) 휴직교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0조 (휴직 및 파견근무의 시행) ①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 및 학술 관련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교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② 계약제 교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및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 단, 정관 제44조의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사유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휴직 및 파견근무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휴직및파견근무규정」을 따른다.

제41조 (복직)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당해 교원을 해직할 수 있다.

제 4 장 상 별

제42조 (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만10년, 만20년, 만30년 간의 근속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때
4. 교육 및 연구실적이 탁월할 때

제43조 (표창의 결정 및 방법) ① 표창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표창으로는 표창장, 표창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승급 또는 특별상여금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정관」, 본교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5조 (징계 구분)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한다.

- ① 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케 한다.
-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제45조의2 (경고 및 주의) 총장은 교원이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나 징계 시효의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 할 수 있다. 단, 경고나 주의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제46조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 수

제47조 (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삭제

제 6 장 복 무

제48조 (주당책임시수) ① 정년제 교원의 책임시수는 연간 18시간 또는 학기당 9시간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사료지급규정」을 따른다.

- ② 계약제 교원의 학기별 주당 책임시수는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책무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책임시수를 추가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9조 (금지사항) ① 교원은 직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 ② 교원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원은 교내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0조 (외부출강) ① 교원이 외부 출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강의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매학기 개강 이전에 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외부 출강은 연구일에 한하여 가능하며 출강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본교 주당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 또는 책임시수 경감을 적용받는 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특강을 제외한 외부 출강을 할 수 없다.

제51조 (해외여행) ① 교원은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전공주임) 및 대학장의 결재가 완료된 해외여행신청서를 7일전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교원의 해외여행은 학교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학기당(방학기간 제외)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은 총 15일(휴일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무수행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학기 중 개인적인 목적의 해외여행은 허가하지 않으며, 다음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신청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보장계획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학술회의의 발표 및 토론, 좌장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2. 연구활동, 교육시찰 등의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또는 본교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기타 필요한 사유(단,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총장이 허가할 경우

④ 해외여행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당해 학기 중에 보충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경우

2. 직전 학기 책임시수 부족 등 강의 및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해외여행신청서 사전제출 미이행시 지연 사유서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2회 누적시 교무처장 면담을 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 및 향후 1년간 학기 중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 (연구년) ① 정년제 교원의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 제도를 시행한다.

② 교원 연구년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연구년제도에관한규정」을 따른다.

제53조 (소속변경) 총장은 학문연구 또는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소속 학과(부), 대학(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 (내부겸직) ① 총장은 교원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이외의 대학, 대학원, 연구소, 부속기관 등 제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은 원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외에 겸직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제55조 (외부겸직) ① 교원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의 외부겸직 신청 및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겸직허가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1 제21차 교무위원회>)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교원재임용 및 승진심사규정, 계약제신임교원인사규정, 교원특별채용규정, 교원임용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교직원임용규정 중 교원의 임용 및 기타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퇴직시까지의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휴직, 파견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B)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도 조교수(B)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항, 제6조 개정, 제8조제1항제1호 삭제, 동조동항제2호 개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항번호 변경, 동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항번호 변경 및 개정, 제14조 조제목 변경, 동조제1항,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개정, 제15조 삭제, 제16조 조제목 변경, 동조제1항, 동조동항제1호 개정, 동조제2항 삭제, 동조제3항 개정, 제16조의2 신설, 제20조제1항 개정,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동조동항제2호, 동조제3항 개정, 제23조제1항 개정, 동조제3항 삭제, 제5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3 개정 <2013 제10차 교무위원회>)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3항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B)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2조제3항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B)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 전임강사 명칭 폐지 이전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에게는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조교수 근무 소요연수를 4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개정, 제23조의2 신설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별표3 개정 <2013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의2 신설 <2014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별표3 개정 <2014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3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19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23조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23조의8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6조의2, 제26

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6조의9, 제26조의10, 제26조의11, 제26조의12 신설, 제11조의2 삭제, [별표1], [별표2], [별표3] 개정, [별표3의2],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신설 <2014 제11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별표4]의 경과조치는 2014-2학기 승진대상자까지 적용한 후 폐지하고, 이 개정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는 [별표6]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5 개정 <2014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의1,2,3, 제7조, 제8조제2항, 제16조의2의제3항, 제20조의2의제1항 및 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4항, 제45조제1항, 제2항, 3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개정, 제20조의2의제3항, 제45조제4항 신설, [별표2], [별표3] 개정 <2015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제1항 개정) 다만 제21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6조의4제2항, [별표2], [별표3]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 제23조의4, 제23조의8, 제26조의4,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11,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8] 개정) <2016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3호, 제5조제1항 개정, 제11조의3 신설, 제20조제2항 및 동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23조의5 제2항, 제26조의8 제3항 제2호, 제26조의9 제2항, 제27조 및 동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 2], [별표 5] 개정, [별표 6] 삭제, [별표 9] 개정) <2016 제25차 교무위원회>

② 제28조의2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8조의2 신설) <2016 제25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의3(계열구분)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최초재임용/승진/재임용평가 대상자는 연구실적과 정량평가를 산정할 때 전체평가기간을 소속학과 계열의 평가기준으로 일괄적용 한다.

② 제28조의2(보직교원 최소연구실적 감면)는 시행일 이후 정년보장 및 부교수 승진 대상교원은 소급적용하되, 2017년 3월 1일 이전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5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개정, 동

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2017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항 개정) <2017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의3제1항, 제21조제2항제1호, 23조의3 제1항제1호, 제23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6조의4제1항제1호, 제26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다만 제21조 제6항, 제23조 제4항, [별표10], [별표11]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6항, 제23조제4항, [별표10] 개정, [별표11] 신설) <2017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1조제6항 개정) <2017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9] 개정) <2018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제3항 삭제, 제23조의4제3항, 제23조의5제3항 개정, 제23조의6, 제26조의5 삭제, 제26조의8제1항 개정, 제26조의9제4항 삭제, [별표5], [별표10] 개정) <2018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5조 제1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제2조 제4항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제2조 제5항 신설, 제3조 조 번호 변경,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 제4조 조 번호 변경,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개정, 제5조 제1항 개정) <2019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3조의3 제1항 제1호, 제26조의4 제1항 제1호, [별표 11] 개정) <2019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3항, 제26조의8 제3항 제2호 가목, 다목, [별표 5] 개정) <2019 제16차 교무위원회>
(승진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3항은 2019년 12월 23일 이후 승진 임용 대

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6조의2 제2항, [별표 1] 개정) <2019 제17차 교무위원회>

(초임호봉 확정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 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별표 3] 개정) <2020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 1] 개정) <2020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 제3항 개정) <2020 제8차 교무위원회>

(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정직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8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2020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의2 신설) <2020 제27차 교무위원회>

[별표 1] 초임호봉 확정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

구분	경력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연구 경력	학위취득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최대 3년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최대 2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100% (최대 5년 이내)
	연구원	〈삭제〉	〈삭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관할청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Post-Doc 경력	50% (단, 박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교육 경력	교원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교원 : 100%
			· 비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등) - 주당수업시수 9시간 미만 : 30% - 주당수업시수 9시간 이상 : 50%
			· (시간)강사 : 30%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제 교원 포함)	5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유치원 교원 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삭제〉	〈삭제〉	〈삭제〉

구분	경력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산업체 (실무) 경력 및 유사 경력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 (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무급, 비상근 공무원 경력 제외) ※ 군 경력은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만 인정하되 아래 경력은 제외함. 1. 특례보충역의 해당전문분야 의무종사기간 2.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3. 무관후보생 경력	· 공무원 경력 : 70% · 군 경력 : 100%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전임으로 상근한 경력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을 말함.	30%
	민간기업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민간산업체에서 관련이 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0%
	종교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목사로서 상근한 경력	30% ※ 기독교학과 또는 관련과목 담당 교원에 한함.

[비고]

1. <삭제>
2.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산업체 경력 포함) 또는 교육경력은 그 중 하나만 인정함
3.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신입교원의 연구 및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함(1년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석·박사학위 취득경력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인정함
5. 석·박사학위 취득경력을 제외한 연구 및 교육, 산업체 등 경력은 환산경력기준으로 최대 5년 이내에서 인정함(단, 특별 및 경력직 채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6.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함

[별표 2] 신입교원 최초재임용 영역별 조건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A계열	자연B계열	미술계열
연구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 SCIE 1편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 SCIE 1편	등재(후보) 6편 또는 SCIE 2편 ※ 1.SCIE 1편은 필수 (비고2 해당학과 제외) 2. 주/교신저자만 인정	등재(후보) 6편 또는 SCIE 2편 ※ 1.SCIE 1편은 필수 2. 주/교신저자만 인정	등재(후보) 3편 또는 등재(후보) 1편 + 개인전 1회 또는 개인전 1.5회 (개인전 1회 + 단체전 2회)
교육	1. 강의평가 단과대학별 하위 20% 이상 또는 개인평균점수 4.0 이상 2. 취임강의 1회 이상(신규임용 2학기 이내에 시행해야 함)				
봉사	학교 공식행사 참석률 80% 이상 ※ 학교 공식행사 :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입학전형일, 교수회의 및 교수연수회				
소속 교수 평가	소속교수 평가자로 선정된 교수 전원의 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 평가항목은 [별표10]의 소속교수 평가서를 따름				
비고	1. 상기 학술지의 편수는 공동연구업적 인정비율에 따라 100%가 될 경우를 1편으로 인정 2. 식품영양학전공(단체급식/급식경영), 원예생명조경학과(조경설계) : 자연A 계열기준을 적용 하되, SCIE 1편 = 등재(후보) 3편으로 대체 가능 3. 미술계열 : 개인전과 단체전은 상호환산인정 불가 4. ①<삭제> ②AHCI, SCIE, SSCI는 상호대체인정 ③SCOPUS 1편은 등재지 1편으로 인정 ④해외특허 1건은 SCIE 1편으로 인정 ⑤<삭제> 5.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모든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발표(게 재)가 완료되어야 함.				

〔별표 3〕 승진임용신청을 위한 최소연구실적

승진 직위	소요연수	구 분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A계열	자연B계열	미술계열
조교수 ↓ 부교수	4년 ※ 조교수(1년차) 신규임용교원의 최초임용기간 (2년)은 승진 임용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비고 4참조)	교육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 SCIE 1편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 SCIE 1편	SCIE 2.5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1.5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3편 또는 등재(후보) 1편 +개인전 1회 또는 AHCI,SSCI, SCIE 1편 또는 개인전 1.5회 (개인전 1회+ 단체전 2회))
		일반	등재(후보) 4편 또는 AHCI,SSCI, SCIE 1.3편	등재(후보) 4편 또는 AHCI,SSCI, SCIE 1.3편	SCIE 3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2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4편 또는 등재(후보) 2편+개인 전 1회 또는 AHCI,SSCI, SCIE 1.3편 또는 개인전 2회
부교수 ↓ 교수 ∧ 정년보장 ∨	5년	교육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 SCIE 1편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 SCIE 1편	SCIE 3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1.5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3편 또는 등재(후보) 1편 +개인전 1회 또는 AHCI,SSCI, SCIE 1편 또는 개인전 1.5회 (개인전 1회+ 단체전 2회)
		일반	등재(후보) 5편 또는 AHCI,SSCI, SCIE 1.3편	등재(후보) 5편 또는 AHCI,SSCI, SCIE 1.3편	SCIE 4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2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5편 또는 등재(후보) 1편 +개인전 2회 (등재(후보) 3편+개인 전 1회) 또는 AHCI,SSCI, SCIE 1.3편 또는 개인전 2.75회 (개인전 2회+ 단체전 3회)
비고			1. 상기 학술지의 편수는 공동연구업적 인정비율에 따라 100%가 될 경우를 1편으로 인정 (공동연구 업적 인정비율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름) 2.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육집중교수의 최소연구실적 기준과 동일함. 3. 식품영양학전공(단체급식/급식경영), 원예생명조경학과(조경설계): SCIE 1편 = 등재(후보) 3편 으로 대체 가능함(단, 조교수→부교수/부교수→교수 승진시에는 SCIE 1편에 상응하는 등재(후보) 3편 이상이 주/교신저자여야 함) 4. 자연B계열 : (구)콘텐츠디자인학과로 기임용된 경우에 한함 조교수→부교수/부교수→교수(일반교수) 승진시에는 AHCI/SCIE/SSCI 2편 또는 AHCI/SCIE/SSCI 1편 + 등재(후보) 3편 조교수→부교수/부교수→교수(교육집중교수) 승진시에는 AHCI/SCIE/SSCI 1.5편 또는 AHCI/SCIE/SSCI 1편 + 등재(후보) 1.5편 (단, AHCI/SCIE/SSCI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여야 함) 5. 미술계열 : 개인전과 단체전은 상호환산인정 불가 6. ① SCI-SCIE 통합에 따른 환산(2020년 2월 29일 이전 게재 논문) • SCI(2020.2.29.이전) 1편 = SCIE 1편으로 인정 • SCIE(2020.2.29.이전) 1편 = SCIE 0.8편으로 인정 (단, 자연B계열은 동일하게 1편) ② AHCI, SCIE, SSCI는 상호대체인정 ③ SCOPUS 1편은 등재지 1편으로 인정 ④ 해외특허 1건은 SCIE 1편으로 인정 ⑤ 국내특허 1건은 등재지 1편, 국내특허 3건은 SCI 1편으로 인정 (국내특허 대체인정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실적에 한함) ⑥ 기술이전금액은 5,000만원 당 SCIE 0.5편, 교외연구 간접비는 1,000만원 당 SCIE 0.2편 으로 인정 (단, 기술이전 및 간접비 대체 인정은 최소연구실적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임금일을 기 준으로 2020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인정함) 7. 이 조건표에서 조교수란 최초임용기간(2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된 조교수를 의미함. (조교수(1년차)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승진임용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며 최초임 용기간 동안의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음) 8. 조교수(3년차) 또는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최초임용기간을 승진임용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 되 최초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업적(학술지 편수)의 1/2을 인정함. 9. 승진심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은 승진심사 신청 학기 종료 4개월 이전에 발표 (게재/입금)가 완료되어야 함.				

[별표 3의 2] 재임용 최소연구실적

구분	재임용 직위	재임용 구분	평가 기간	최소연구실적
정 년 제	조교수 ↓ 조교수	승진탈락재임용	7년	당해 교원의 부교수 승진심사에 필요한 최소연구실적의 80% 이상 (승진소요연수(4년) 경과 후부터는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연구실적을 가산하여 부과)
		후속재임용	2년	$(\frac{\text{최소연구실적(부교수승진)}}{\text{승진소요연수(4년)}} \times \text{평가기간(2년)})$ 의 80% 이상
	부교수 ↓ 부교수	승진탈락재임용	8년	당해 교원의 교수 승진심사(정년보장심사)에 필요한 최소연구실적의 80% 이상 (승진소요연수(5년) 경과 후부터는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연구실적을 가산하여 부과)
		후속재임용	3년	$(\frac{\text{최소연구실적(교수승진)}}{\text{승진소요연수(5년)}} \times \text{평가기간(3년)})$ 의 80% 이상
계 약 제	개별 임용계약의 재임용 조건을 따름			
비고	1. 승진탈락재임용 : 승진소요연수 경과 후 승진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재임용 2. 후속재임용 : 승진탈락재임용 후의 재임용 3. 평가기간 : 재임용 기준일 직전의 임용기간 4.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모든 연구 및 산학업적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발표(게재)가 완료되 어야 함.			

〔별표 4〕 경과조치(2014-2학기 승진대상자까지만 적용 후 폐지)

승진학기	경과조건
2011-2, 2012-1	개정 전 승진 조건
2012-2	개정 전 승진 조건 2/3 + 개정 후 승진 조건 1/3
2013-1, 2013-2	개정 전 승진 조건 1/2 + 개정 후 승진 조건 1/2
2014-1, 2014-2	개정 전 승진 조건 1/3 + 개정 후 승진 조건 2/3
2015-1 이후	개정 후 승진 조건

주1)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신입교원의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조건을 적용한다.

주2)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승진한 자로서 부교수 또는 교수 승진대상인 경우에는
〔별표 4〕의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주3) 개정 전 승진조건

대학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승진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자연과학대학	SCI(E) 2편 이상
정보미디어대학	SCI(E) 또는 SSCI 중 2편 이상
의류학과	SCI(E) 2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6편 이상
미술대학	공인된 국내외 국제전(개인) 참가 또는 국내 개인전(A급) 1회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실용화된 작품으로서 공인된 공모전(*) 수상작 중 2점 이상

* 공인된 공모전 수상

(국제) 미국IDEA Award, 독일IF Award, 일본GD Award, 동경타임디렉터스클럽공모전,
브르노 국제그래픽 비엔날레, 뉴욕페스티벌

(국내) 한국산업디자인상,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전, 코리아 국제포스터비엔날레,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공모전

〔별표 5〕 정년보장심사 및 승진심사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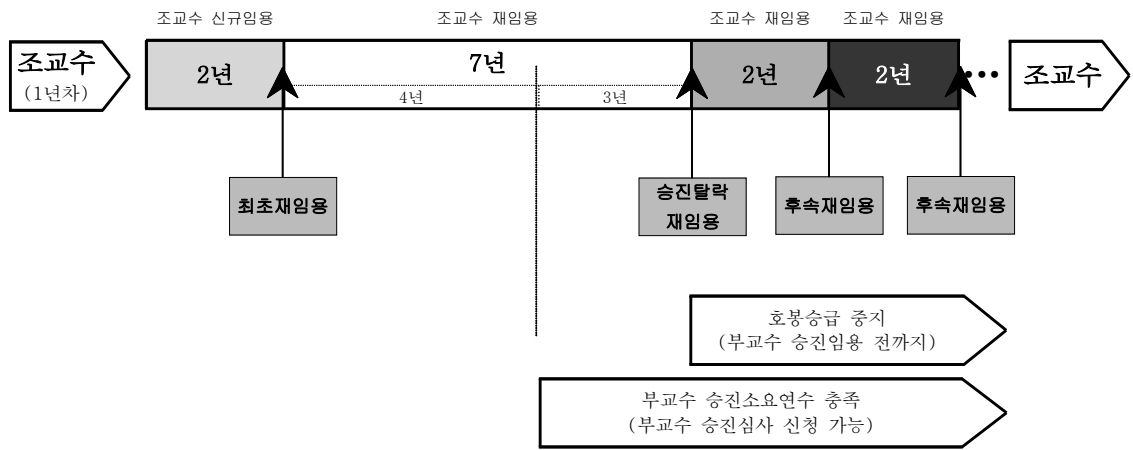
구분		승진(조교수→부교수)			정년보장(부교수→교수)																										
승진소요연수		조교수 6년			부교수 5년																										
심사통과기준점수 (100점)		총점 75점 이상(재심시 80점 이상)			총점 80점 이상(재심시 85점 이상)																										
심사 총점 (100점)	정량 평가 (70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점수</th><th rowspan="2">영역별 점수 계산식</th></tr><tr><th>최대점수</th><th>기본점수</th><th>변폭점수</th></tr><tr><td>교육</td><td>30점</td><td>20점</td><td>10점</td><td rowspan="4">• 영역별 점수=기본점수+(변폭점수×취득비율) • 영역별 취득비율=min(1, $\frac{\text{개인별교수업적평가성취비율}}{\text{계열별평균성취비율}}$)</td></tr><tr><td>연구</td><td>30점</td><td>22점</td><td>8점</td></tr><tr><td>봉사</td><td>10점</td><td>8점</td><td>2점</td></tr><tr><td>계</td><td>70점</td><td>50점</td><td>20점</td></tr></table>					구분	점수			영역별 점수 계산식	최대점수	기본점수	변폭점수	교육	30점	20점	10점	• 영역별 점수=기본점수+(변폭점수×취득비율) • 영역별 취득비율=min(1, $\frac{\text{개인별교수업적평가성취비율}}{\text{계열별평균성취비율}}$)	연구	30점	22점	8점	봉사	10점	8점	2점	계	70점	50점	20점
		구분	점수			영역별 점수 계산식																									
			최대점수	기본점수	변폭점수																										
		교육	30점	20점	10점	• 영역별 점수=기본점수+(변폭점수×취득비율) • 영역별 취득비율=min(1, $\frac{\text{개인별교수업적평가성취비율}}{\text{계열별평균성취비율}}$)																									
		연구	30점	22점	8점																										
		봉사	10점	8점	2점																										
		계	70점	50점	20점																										
		1. 정량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간 동안 행해진 교수업적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 연구, 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2. 개인별 교수업적평가점수 성취비율은 평가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취득한 교수업적평가점수를 연간소요점수의 합산점수로 나눈 값임. ※교수구분(일반교수, 교육집중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특성에 따른 연간소요점수를 적용함. ※연간소요점수가 보직 면제 등의 사유로 0점인 경우에는 해당영역 만점 처리함.																													
		3. 계열별 평균 성취비율은 2014년 3월에 발표된 단과대학별 정년제 조교수와 부교수의 영역별 교수업적성취비율의 평균값을 준용함																													
<table><tr><th rowspan="2">계열</th><th colspan="3">평균 교수업적성취비율</th></tr><tr><th>교육영역</th><th>연구영역</th><th>봉사영역</th></tr><tr><td>인문계열</td><td>160%</td><td>212%</td><td>262%</td></tr><tr><td>사회과학계열</td><td>172%</td><td>253%</td><td>294%</td></tr><tr><td>자연A계열</td><td>182%</td><td>507%</td><td>277%</td></tr><tr><td>자연B계열</td><td>162%</td><td>319%</td><td>172%</td></tr><tr><td>미술계열</td><td>167%</td><td>681%</td><td>223%</td></tr></table>					계열	평균 교수업적성취비율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인문계열	160%	212%	262%	사회과학계열	172%	253%	294%	자연A계열	182%	507%	277%	자연B계열	162%	319%	172%	미술계열	167%	681%	223%
계열	평균 교수업적성취비율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인문계열	160%	212%	262%																												
사회과학계열	172%	253%	294%																												
자연A계열	182%	507%	277%																												
자연B계열	162%	319%	172%																												
미술계열	167%	681%	223%																												
※ 단과대학별 상위 5%, 하위 5%를 제외한 나머지 조교수와 부교수의 교수업적성취비율의 평균값(소수점 이하 올림) ※ 연간소요점수는 일반교수 기준으로 일괄 적용함.																															
4. 계열별 정년제 조교수와 부교수의 평균업적성취비율을 영역별 만점으로 설정함.																															
심사 총점 (100점)	역량 평가 (30점)	<table><tr><th>구분</th><th>점수</th><th>비고</th></tr><tr><td>자체평가서 평가</td><td>20점</td><td>• 자체평가서 기반 심사평정(교육, 연구, 봉사 각 영역별 5점 척도로 평가)</td></tr><tr><td>소속교수 평가</td><td>10점</td><td>• 소속학과 교수 평가를 종합하여 심사평정(10점 만점으로 환산)</td></tr><tr><td>계</td><td>30점</td><td></td></tr></table>				구분	점수	비고	자체평가서 평가	20점	• 자체평가서 기반 심사평정(교육, 연구, 봉사 각 영역별 5점 척도로 평가)	소속교수 평가	10점	• 소속학과 교수 평가를 종합하여 심사평정(10점 만점으로 환산)	계	30점															
		구분	점수	비고																											
		자체평가서 평가	20점	• 자체평가서 기반 심사평정(교육, 연구, 봉사 각 영역별 5점 척도로 평가)																											
		소속교수 평가	10점	• 소속학과 교수 평가를 종합하여 심사평정(10점 만점으로 환산)																											
		계	30점																												
		1. 역량평가는 자체평가서 평가와 소속학과 정년제 교수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 소속교수 평가로 구분함.																													
		2.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업적평가가 완료된 교수업적평가결과와 자체평가서를 평가자료로 활용함.																													
		3. 자체평가서 평가 : 평가대상자가 정한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교육, 연구, 봉사 각 영역별 5점 척도로 평가대상자의 업적 전반에 걸쳐 정년보장심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가 평가함.																													
		4. 소속교수평가 : 평가 대상자에 대한 소속학과 정년제 교수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 반영시 10점 만점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함(취득점수 × 0.1).																													
		5. 소속교수평가에 참여하는 학과 교수들 중에 휴직, 신입교원은 제외하며, 학과 교수의 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에서 유사분야 학과의 교수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음.(평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년 교수를 반드시 포함함)																													
6. 자체평가서 평가 및 소속교수 평가 결과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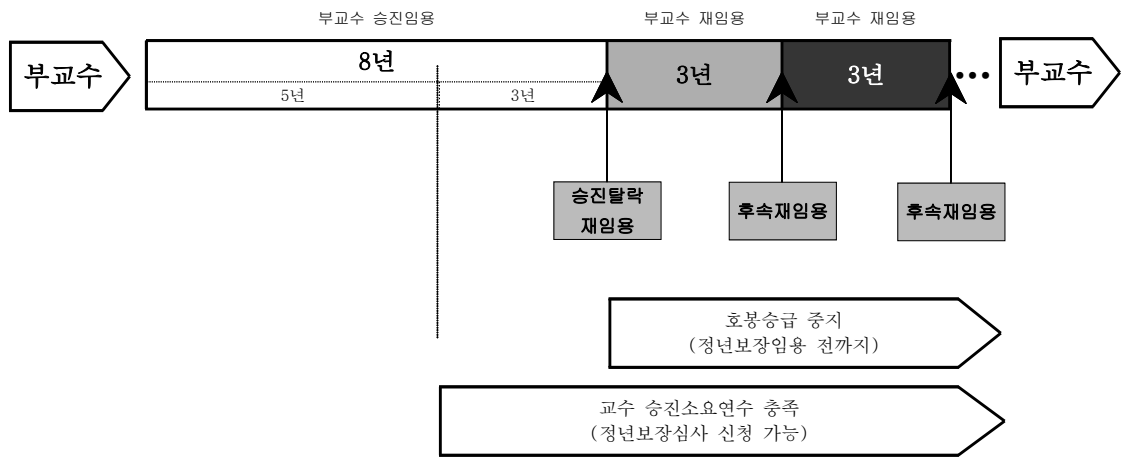
〔별표 6〕 〈삭제〉

〔별표 7〕 재임용의 구분

1. 신규임용된 조교수의 재임용



2. 승진임용된 부교수의 재임용



〔별표 8〕 자체평가서 심사평정표(정년보장심사 및 승진심사위원회용)

자체평가서 심사평정표						
평가영역		영역별 평가 결과				
영역구분	영역별 가중치	탁월(S,5)	우수(A,4)	보통(C,3)	미흡(D,2)	불량(F,1)
① 교육						
② 연구						
③ 봉사						
총점(20점 만점)						
평가기준	▶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심사위원이 0부터 4까지 정수로 배정하되, 총합은 4로 맞춤 (평가대상자가 자체평가서에서 정한 영역별 평가가중치를 고려함) ▶ 산학협력영역은 세부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영역(교육/연구/봉사)에 포함하여 심사 평정함 ▶ 영역별 평가점수는 5점 척도(1 ~ 5), 총점은 20점 만점으로 처리함. ▶ 평가자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함(위원장은 평가에서 제외). ▶ 불량(F)로 평가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거나 관련 증빙을 별도로 첨부해야 함. ▶ 평가자별 점수(최대 20점) 중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함.					

〔별표 10〕 소속교수 심사평정표(학과교수용)

1. 정년제 전임교원 - (최초)재임용 및 승진(정년보장)임용 심사용

소속교수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	성명 :
------	------	------

평가영역 (총 100점)	평 정 항 목	배점	평점(해당등급에 V표시)				평가사유
			A	B	C	D	
기본자질 (4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기본자질, 책임감, 교육·연구윤리, 양성평등의식 등)	30					
	구성원간의 협력 및 인화 (친화력, 의사소통능력 등)	10					
강의 (20점)	수업 충실성 (강의준비 및 태도, 교수학습프로그램 참여 등)	20					
학생지도 (20점)	학생지도 및 행사참여 (학생상담 및 소학회 지도, 교내외 학생행사 참여 등)	20					
기여도 (20점)	학과(부서)발전 기여도 (학과활동, 행사참여, 교수회의참여 등)	10					
	학교발전 기여도 (교내봉사, 대외평가, 재정지원사업 활동 참여 등)	10					
총 점		*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 D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총점이 만점인 경우는 지양하여야 한다.

■ A:우수, B:보통, C:개선요망, D:부적합 = 1: 0.8 : 0.6 : 0.4 로 계산하며 각 항목의 배점과 평점의 배율의 곱이 해당 평정항목의 점수가 된다.(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_____ (성명) _____ ①

2. 계약제 전임교원 - (최초)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용

가. 책임시수가 12인 계약제 전임교원/ 석사이하 외국인 전임교원

소속교수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	성명 :
------	------	------

평가영역 (총 100점)	평정항목	배점	평점(해당등급에 V표시)				평가사유
			A	B	C	D	
기본자질 (4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30					
	구성원간의 협력 및 인화	10					
강의 (20점)	수업 충실성	20					
학생지도 (20점)	학생지도 및 행사참여	20					
기여도 (20점)	학과(부서)발전 기여도	10					
	학교발전 기여도	10					
총 점		*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 D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총점이 만점인 경우는 지양하여야 한다.

☐ A:우수, B:보통, C:개선요망, D:부적합 = 1: 0.8 : 0.6 : 0.4 로 계산하며 각 항목의 배점과 평점의 배율의 곱이 해당 평정항목의 점수가 된다.(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나. 책무로 인하여 시수가 감면된 계약제 전임교원

소속교수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	성명 :
------	------	------

평가영역 (총 100점)	평 정 항 목	배점	평 점 (해당등급에 V표시)				평가사유
			A	B	C	D	
기본자질 (4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30					
	구성원간의 협력 및 인화	10					
강의 및 학생지도 (20점)	수업 충실성	10					
	학생지도 및 행사참여	10					
책무 (20점)	관련책무 능력	20					
기여도 (20점)	학과(부서)발전 기여도)	10					
	학교발전 기여도	10					
총 점		*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 D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총점이 만점인 경우는 지양하여야 한다.

☐ A:우수, B:보통, C:개선요망, D:부적합 = 1: 0.8 : 0.6 : 0.4 로 계산하며 각 항목의 배점과 평점의 배율의 곱이 해당 평정항목의 점수가 된다.(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_____ (성명) _____ ①

〔별표 11〕 계약제 전임교원 강의평가 세부기준(승진·재임용)

	최초 재임용/조교수 재임용 (6년차까지)	부교수 승진임용/부교수 재임용 (6년차 이후)
교육전담교수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2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0 이상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4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2 이상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형)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2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0 이상	
기타	※ 계약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학기의 평균으로 평가함 ※ 석사이하 외국인 계약제 전임교원은 임용연차와 상관없이 교육전담교수 조교수 재임용 조건에 따름 ※ 평가서는 [별표10] 소속교수 평가서(계약제)의 책무 유형에 따라 구분함	